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2020-163호
2020년 8월 28일(금)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0-35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0-214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변경 공고 4
○ 여수시 공고 제2020-2147호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

기 타

회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0- 35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허가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면적 (㎡)	점용·사용 목 적	점용·사용 기 간	피 허 가 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0-081 (2020. 8.28.)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684-6번지 지선 공유수면	795㎡ (직접795㎡)	해상태양광 실증용 부잔교 설치	2020.8.28. ~ 2021.8.27. (1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810 (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아베스 대표 추승엽	

2020. 8. 28.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0-2143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변경)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위촉일시	2020년 8월 24일
공고기간	2020년 8월 28일 ~ 2020년 9월 16일 (20일간)

위촉내역

읍·면	동·리	보증인	변호사·법무사	생년월일	비고
-	시전동	김동민	[ ]	1945.03.20	지정보증인 (신기동→시전동)
-	〃	김용한	[ ]	1945.08.28	(신기동→시전동)
-	〃	서근배	[ ]	1953.03.15	(신기동→시전동)
-	〃	김태열	[ ]	1950.09.03	(신기동→시전동)
-	〃	김정열	[ ]	1942.12.03	(신기동→시전동)
-	신기동	서경문	[ ]	1946.10.10	지정보증인 (시전동→신기동)
-	〃	서한평	[ ]	1945.06.27	(시전동→신기동)
-	〃	서경종	[ ]	1954.03.28	(시전동→신기동)
-	〃	김희용	[ ]	1948.12.02	(시전동→신기동)
-	〃	권동춘	[ ]	1953.06.02	(시전동→신기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여수시 공고 제 2020-2147호

공 고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일반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명예수당 지급으로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로 지정

○「여수시 참전자유공자지원 조례」제3조(지원대상) 및 제4조(지원사업)에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근거 마련

○ 일반참전 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을 연차적으로 지급 추진

* 일반 참전유공자 미망인 : 21년도 5만원, 23년도 7만원, 25년도 10만원

○ 주요 개정내용

조 항	기 존	변 경
제3조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유공자 **유공자 미망인**
제4조 (지원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호국정신 계승 또는 복리증진사업	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10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호국정신 계승 또는 복리증진사업

3. 입법 예고기간 : 2020. 8. 28. ~ 9. 17.(21일간)

4.「여수시 참전유공지지원 조례」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사회복지과

다. 의견제출 방법

-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 ○ E-Mail : kkj0609@korea.kr
- ○ 전　화 : 061-659-3657
- ○ F A X : 061-659-582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전 유공자의 범위) 참전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이하 “미망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2. 미망인에게 미망인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3.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과 미망인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사람 중 지정한 예금 계좌의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1월 중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 단서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해당 명예수당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망인 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미망인 명예수당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는 5만원을, 2023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는 7만원을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이하 “미망인”이라 한다.) ---------- ----------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
제4조(지원사업)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개정 2019. 1. 1.> 〈 신 설 〉	제4조(지원사업)---------- ---------- ---. 1. 유공자---------- --------
2.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9. 1. 1.>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2. 미망인에게 미망인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3. 유공자가 ---------- ---------- 4. ---- 유공자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자 중 지정한 예금계좌의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	**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과 미망인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 --유족은 ---------- ---------- ---------- . ③ 명예수당 ---------- ---------- --------. ④----------명예수당 ----------사람 중 ------- ----------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1월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 단서조항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명예수당----------. ②----------제2항----------단서----------.
제6조의1(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일로보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급중지 및 환수) ①----------해당 명예수당----------. 1. 생략 2. 생략 ②----------해당 명예수당----------.